

제201회 영등포구의회
2017년도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
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김길자 의원 대표발의】



2017. 6. 21.

行 政 委 員 會
專 門 委 員 崔 光 默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 245호로 2017년 6월 13일 김길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6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,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나.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(안 제3조)
- 다. 공개범위(안 제4조)
- 라. 공개 방법 및 내용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이 제정 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,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,
 -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,
 - 안 제3조에는 비용의 공개원칙과 공개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고,
 - 안 제4조에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시 공개해야 할 비용기준과, 공개대상 공공시설물을 별표로 정하는 등 공개 범위를 명시하였으며,
 - 안 제5조에는 공개방법과 공개해야할 내용을 규정하였음.
-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,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, 공공시설물에 대한 애착심을 향상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기대되나, 향후, 공공시설물의 설치, 관리·이용상 문제점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방법이 강구되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참 고 자 료

1 건설산업기본법

제42조(건설공사 표지의 게시) ①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, 발주자, 시공자,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② 건설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, 설계자,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③ 발주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표지의 게시 비용 및 표지판의 설치 비용을 해당 건설공사의 공사 비용에 계상(計上)하여야 한다.

2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,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‘공공시설’이란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,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·청소년·노인·장애인 시설, 문화·체육시설 및 교량, 주차장,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.
2. ‘공공건축물’이란 서울특별시, 서울특별시 소속행정기관,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

건립한 관공서, 공공도서관, 공연장, 전시장,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.

3. ‘준공석’ 이라 함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.

4. ‘준공판’ 이라 함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.

5. ‘건립비용’ 이라 함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.

제3조(건립비용 공개 원칙) 서울특별시장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시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조(공개 범위) ①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하도록 한다.

1.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
-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.
 1. 공사명
 2. 공사기간
 3. 발주자 기관의 명칭
 4. 설계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)
 5. 감리자의 성명(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)
 6.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
 7.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·기술자격종목 및 등급
 8. 건립비용